# 「모바일 신분증」서비스 이용약관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은행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 사이에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정부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이하 "모바일 신분증"이라 한다)을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이하 "단말기"라 한다)에 저장하여 필요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본인 확인, 자격 확인, 신원 증명, 연령 확인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3. "모바일 신분증 월렛"(이하 "월렛"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용자 소유의 단말기에 모바일 신분증을 보관, 관리하는 서비스로 이용자의 DID와 함께 관리하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 4. "DID"(Decentralized Identifier)라 함은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월렛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로서 이용자와 1:1로 대응되며 이용자 본인의 단말기 내에서 개인키를 이용하여 생성 및 저장됩니다.
  - 5. "개인키"라 함은 월렛을 통해 생성되는 고유한 식별값으로, 이용자가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 서명을 수행하기 위해 생성되고 월렛 내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 6. "공개키"라 함은 개인키와 1:1로 대응되며, 블록체인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 7. "이용기관"이란 이용자가 시스템 등 이용 시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8. "검증"이란 모바일 신분증 소지자가 제시하는 정보가 모바일 신분증 소지자의 정보임을 확인하는 행위와 이용기관이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이용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은행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1개월 전에 서비스에 공지하고 SMS, 앱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최소 1 개월 이상 서비스에 공지하고 SMS, 앱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은행이 제2항 및 제3항을 서비스에 공지 또는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 내용이 서비스에 공지되거나 이용자에게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 내용이 공지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4조 (약관 외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제5조 (계약의 성립)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서비스 내에 게시되는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완료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제6조 (서비스의 종류)

은행은 발급 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신규 발급, 재발급, 삭제 기능과 모바일 신분증 이용과 관련된 본인 확인, 인증 내역 확인, 도난·분실 신고 접수 서비스와 검증 앱을 통한 신원 검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7조 (모바일 신분증 신청 및 발급)

- ① 이용자는 본 약관을 포함하여, 은행이 제시하는 필수사항 또는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은행이 제시하는 인증 방식에 따른 인증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인증 비밀번호, 휴대폰 소유 확인 및 실명인증, 모바일 신분증 발급 절차를 완료한 후 생체(안면)인식 절차를 수행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8조 (모바일 신분증 신청 및 발급 제한)

은행은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모바일 신분증 신청에 대하여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청하였을 경우
- 2. 신청 및 발급 절차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 3. 은행이 제시하는 인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4. 사고 정보를 이용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신청하였을 경우
- 5. 기타 은행이 정한 신청 또는 발급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 신청 등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급이 곤란한 경우

#### 제9조 (서비스의 범위)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을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이용자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신원 또는 자격 확인
- 2. 이용자가 이용기관 웹사이트 등 사용 시 모바일 신분증 정보 제출을 통한 간편 인증

## 제10조 (서비스 이용제한)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하나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긴급히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이용자의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2.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고 및 동의 없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이용자로 가입한 경우
- 3. 모바일 신분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 4. 이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 5. 이용자의 모바일 신분증이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 6. 서비스와 관련된 보안 절차나 이용자의 전자서명 신원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의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 7.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8.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모바일 신분증 또는 휴대폰의 도난 분실 신고가 접수된 경우

####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하 거나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정기점검, 교체 또는 고장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2. 이용자가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3.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해킹, DDOS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4.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 5. 개별 서비스 제공업자 또는 제3자와 계약 종료 등의 사정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 제한, 변경 또는 종료하는 경우 제15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은행이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본 조에 따른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중단, 종료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고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제12조 (모바일 신분증의 효력)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카드형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제13조 (은행의 의무)

- ①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한 날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은행은 이용자의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요청 등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③ 은행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은행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은행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단말기, 앱, 비밀번호, 서비스 내 화면 등의 접근 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위임,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② 이용자는 단말기, 앱, 비밀번호, 서비스 내 화면 등의 접근 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 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 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단말기, 앱, 비밀번호, 서비스 내 화면 등의 접근 매체를 스스로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

- 야 하며, 접근 매체의 훼손·분실·도난·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즉시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개인키와 공개키, 모바일 신분증이 보관되는 월렛을 스스로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는 아래의 책임이 있습니다.
  - 1. 이용자는 월렛에 대한 접근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도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제3자에게 월렛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 및 손해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2. 이용자가 월렛 접근 정보를 분실한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서비스 이용 불가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 3. 이용자가 본인 소유의 새로운 단말기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이용자에게 발급된 월렛은 무효화 되고, 모바일 신분증 또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서비스에 장애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 2. 모바일 신분증 및 이용 기관의 지적재산권, 인격권 등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3. 모바일 신분증 또는 이용 기관이 제공하는 정상적인 용도 이외의 방법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4. 모바일 신분증 신청 및 발급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5.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6.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서비스 이용 권한을 대여, 양도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이용자는 반드시 본인의 서비스 단말기에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본인의 PIN번호 및 생체정보만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7. 앱 및 검증앱의 내용을 수정·변경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디어셈블 등 본 래의 목적에 벗어난 변형, 소스 코드 분석 등의 행위
  - 8. 서비스 또는 서비스를 통해 바이러스, 기타 악성 소프트웨어, 코드 등을 배포하는 행위
  - 9.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또는 무력화하는 행위
  - 10. 기타 모바일 신분증 또는 이용 기관이 제시한 지침 및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사회 규정상,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 ⑥ 이용자가 본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은 이용자의 계정을 중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모든 또는 일부의 서비스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조항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된 이용자에 대한 제3자의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필요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 (통지방법)

이용자에 대한 통지는 전자문서, 전자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이 운영하는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 제16조 (영업의 휴지 · 폐지)

- ① 은행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의 영업을 휴지하려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영업을 휴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휴지기간을 정하여 이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의 영업을 폐지하려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영업을 폐지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이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 (손해배상)

- ① 은행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은행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은행, 이용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18조 (면책사항)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 이용자가 신청앱을 삭제한 경우
  - 2.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이 이 약관에 따라 정지된 경우
  - 3. 이용자의 네트워크 환경 문제로 인해 알림,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4. 이용자가 알림 메시지 수신을 거부 처리한 경우
  - 5.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해킹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 6.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증설, 교체, 이전 등의 유지 관리 업무를 이유로 사전에 서비스 중단 사실을 공지한 경우
- ② 은행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③ 은행은 이용자와 이용 기관간 거래내용 및 이용자 또는 이용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은행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19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은행과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며,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0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2025.07.22)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07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